



서울대학교 석사·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6. 9. 6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44호, 2016. 9. 6, 일부개정]

- 제9조**(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)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1. 4. 29.]
-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(부)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,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(부)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[신설 2011. 4. 29., 개정 2014. 7. 14.]
- ③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6. 9. 6.]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(원)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[신설 2011. 4. 29., 개정 2016. 9. 6.]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학생 중 「서울대학교 학칙」제89조제1항 및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」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[개정 2011. 4. 29., 2012. 7. 12., 2014. 7. 14., 2016. 9. 6.]
- ⑥ 제5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 중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. [신설 2016. 9. 6.]

부칙 <제2044호, 2016. 9. 6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